

6 최근 동향

가. 가상통화 시장

□ 리브라 발표 등 가상통화 대중화 기대심리로 비트코인이 최근 큰 폭 상승*한 후 현재는 소폭 하락한 상황

* (비트코인 가격) '18.11월 급락한 이후 400만원대 박스권 → 4~5월 지속 상승으로 1,000만원대 도달 → 리브라 발표 후 1,684만원까지 상승('19.6.26) → 현재 소폭 하락한 1,352만원 수준('19.7.5)

○ 비트코인 시세 급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8.6%(비트코인 기준)에 달하였으나, 가격 안정에 따라 하락세

* (김치 프리미엄) -6.6%(5.4) → 0.6%(5.26) → 8.6%(6.28) → 2.2%(7.4)

○ 글로벌 가상통화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비중 확대*(알트코인 비중 감소)되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상통화 시장이 재편

* (글로벌 비트코인 시가총액) 36%('18.5) → 53%('19.2) → 60%('19.5) → 63%('19.7)

- 국내의 경우에도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, 가상통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중요도가 상승

* (국내 비트코인 거래비중) 3%('19.2) → 12%('19.5) → 31%('19.7)

나. 페이스북

□ 페이스북은 자체 가상통화 리브라와 관련하여 각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 추진 중

○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칼리브라(Calibra)는 FinCEN*에 화폐서비스업자(money services business)로 등록하고 미국내 송금 라이선스 신청

* 금융범죄사무국(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)은 자금세탁, 테러자금지원 등 미국내외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

○ 아울러, 뉴욕주 금융서비스국(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)에 비트라이선스(BitLicense)* 취득 프로세스 개시

* 가상통화 관련 사업면허로 면허범위는 뉴욕주와 뉴욕주 거주자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

○ 이외에도 英 FCA, 영란은행 및 스위스 금융규제기관인 FINMA와 규제준수를 위한 관련사항 논의

다. 외국감독기관 등

□ (미국) 페이스북 자체 발행 가상통화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상원(7.16)과 하원청문회(7.17) 개최 예정

○ 맥신 월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발행 일시 중단 요구

○ 제롬 파월 FRB 의장은 중앙은행이 리브라를 "매우 조심스럽게 (very carefully)" 바라 볼 것이며 "규제 및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을 것(very, very high)"

* Regulators Have Doubts about Facebook Cryptocurrency. So Do It's Partners.(NYT, 6.25)

□ (영국) 英 재무부(UK Treasury)와 FCA, 영란은행은 페이스북의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업(working with)

○ 영란은행 총재는 리브라의 안전해야(safe) 하며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주요 중앙은행들의 감독(oversight)이 필요하다고 밝힘

□ (스위스) 토마스 모제 스위스 중앙은행(SNB) 대체위원(Alternate Member)은 "페이스북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,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규제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"

○ "리브라의 개발 과정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, 진행과정에 대해 편만한 마음이다"라고 긍정적 견해를 보임

* European watchdogs demand detail on Facebook's cryptocurrency(Reuters, 6.25)

□ (러시아) 알렉세이 모이시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리브라가 다른 가상통화들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발언

- “리브라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”이라면서 “다만 러시아의 공식 통화가 루블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루블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다른 가상통화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 통화로는 인정 불가”

* Russia Will Not 'Ban' Libra but Illegal to Use It to Pay for Goods and Services (CryptoGlobe, 7.1)

□ (G7) 현재 G7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는 가상통화 관련 G7 T/F 창설 발표(6.21)

- G7 T/F는 리브라 같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소비자 보호법과 같은 규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 예정

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“우리는 혁신에 대한 개방성과 견고한 규제를 결합하고자 하며, 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”라고 발언

* France creates G7 cryptocurrency task force as Facebook's Libra unsettles governments (Reuters, 6.21)

□ (FSB) 랜달 퀴얼 FSB 의장은 “페이스북의 소매분야 지급결제 확대 계획이 규제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유도한다”고 발언

- “FSB와 표준설정기구(SSBs)는 조율된 방식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다자간 대응을 고려할 것”이라고 덧붙임

* FSB press briefing: Chair's opening statement(FSB, 6.25)

□ (BIS)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계획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,

- “국가별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려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노력을 지지한다”고 말하며, “예상보다 빨리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”며 대비 촉구

* Central bank plans to create digital currencies receive backing(FT, 6.30)

참고1

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확정에 따른 대응

- FATF는 '19.6월 가상자산*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확정하고,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

* FATF는 가상통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상자산 (Virtual asset)이라는 용어를 사용

<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주요내용>

-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* 부과
 - * 고객확인업무(Customer Due Diligence), 의심거래보고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 등
-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·등록의무* 등 부과
 - 범죄(경력)자의 가상자산 업(業) 진입을 차단하고, 미신고영업은 제재(sanction)
- 자금세탁방지·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·감독체계 구축*
 - *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·신고를 취소·제한·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, 효과적·비례적·억제적 제재(effective,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) 부과권한 보유

- FATF는 '20.6월,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

-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(김병욱 의원안)은 국제기준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*하고 있으며,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

* ① 가상자산과 취급업소의 정의, ② 취급업소의 신고의무, 미신고 영업시 처벌, ③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경우 금융거래의 의무적 거래 거절 등

- 향후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, 하위법령 개정예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*(Guidance)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

* FATF는 각국 정부,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(Non-binding)인 지침서를 발간

참고2

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(김병욱 의원案) 주요 내용

- ◆ FATF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'19.6월 최종 확정되었으나, '19.2월 실무적 내용이 사전 결정
- ⇒ 국회 협의 통해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('19.3월 김병욱 의원案) 제출, 현재 정무위 논의 중

가. 정의 규정의 국제 정합성 제고 (안 제2조 ← FATF 국제기준)

- FATF에서 정한 ① '가상자산'으로 용어 통일, ② 가상자산 취급 업소' 범위 및 ③ 적용대상 거래 기준을 반영

① 용어의 통일 : 가상자산*

* FATF는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

② 취급업소 범위 : 가상자산 관리, 보관, 매매, 이전(transfer) 등

③ 적용대상 거래 :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의 교환, 가상자산 간 거래 등

나.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(안 제5조의2 ← FATF 국제기준 등)

- FATF는 금융회사에 대해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자금세탁 위험성 높은 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

⇒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거래 : 의무적 거절 및 거절 사유* 명확화

*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,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,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등

다. 취급업소 관련 신고제 정비 (안 제10조, 제17조 ← FATF 국제기준)

- FATF는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한 실효적 관리·감독과 제도 운영 방안*을 채택

* ① 미신고(또는 등록 등) 영업시 처벌 (sanction) 조항, ② 범죄 경력자의 가상통화 관련업 진입 금지, ③ 당국의 신고 말소 (withdrawal) 및 제한 권한 규정 등

⇒ 취급업소 관련 신고제 정비*

* 신고 불수리, 직권 말소, 신고 유효기간을 신설하고, 미신고 시 형사처벌 등